

2023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 I.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 II. 지원자격
- III. 전형일정
- IV. 전형방법
- V. 제출서류
- VI. 전형료
- VII. 2023학년도 '정원 외 인원' 선발
- VIII. 지원자 유의사항
- I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X. 장학금 안내

[서 식] 입학전형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환산표]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I. 전형유형 및 모집인원

입학정원	과정	전형유형	모집인원
100명	석사과정	나군 일반전형	92명
		나군 특별전형	8명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동시지원 가능함.

※ 비 법학사와 타 대학 졸업자를 각각 법령(전체 합격자 수의 1/3 이상)을 준수하여 선발함

※ 특별전형 중 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경제적 배려대상 지원자 중에서 우선하여 선발함.

II. 지원자격

■ 일반전형·특별전형 공통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2023년 2월 28일 이전에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하거나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2.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3. 2020년 9월 30일 이후 실시된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TOEFL(iBT), TOEIC, TEPS에 한함)에 응시하여 서류제출 마감일(2022. 10. 4(화))까지 성적을 제출하는 자(CBT, PBT 성적 및 외국에서 응시한 TOEIC은 인정하지 아니함)

■ 특별전형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가구원(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가구원
*복지급여: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급(중증/경증)으로 등록된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7.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8. 「지방자치법」상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생은 제외함)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또는 그 자녀
10.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의 재원 경력이 있고 해당 아동 복지시설의 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Ⅲ.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22. 9. 26(월) 09:00 ~ 9. 30(금)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입력 (http://lawschool.ewha.ac.kr)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방문접수 불가) ■ 반드시 수험표 출력 보관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4cm) 파일 첨부 ■ 입학원서 접수마감 후 자기소개서 작성 및 수정은 9.30(금) 24:00까지 가능
입학원서(출력본) 및 구비서류 제출	2022. 9. 26(월) ~ 10. 4(화) (10:00~17:00) ※ 토,일,공휴일은 휴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 또는 택배)으로 제출 ■ 2022. 10. 4(화)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06호 ※ 보낼 곳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206호 입학담당자
1차 선발 합격자 발표	2022. 11. 2(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http://lawschool.ewha.ac.kr)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2차 선발 면접 전형	2022. 11. 1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선발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수험표 및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할 것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2. 2(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http://lawschool.ewha.ac.kr) ■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IV. 전형방법

■ 전형요소 및 배점 (일반전형, 특별전형 동일함)

전형요소	1차 선발(서류전형)				2차 선발		총점
	서류평가	학부성적	LEET성적	영어성적	논술시험	심층면접	
점수	50점	40점	70점	20점	10점	10점	200점
반영률	25%	20%	35%	10%	5%	5%	100%

※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선발기준

1.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한 관련규정과 사정원칙에 따라 선발함.
2.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1차 합격자 선발은 서류전형성적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발함.
3.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성적과 2차 논술시험성적 및 심층면접성적을 합한 입학성적 순으로 선발함.
4. 법령에 따라 법학사 취득자와 본교 학사학위 취득자를 각각 입학정원의 2/3 미만으로 선발함.
 - ※ 법학사가 타 전공의 학사학위도 취득(예정)한 경우에는 법학사 분야와 비법학사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 ※ 2개 이상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본교, 타교를 구분함.
 - (예) 타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타교 학위 취득자로 봄.
 -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타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학위 취득자로 봄.
5. 특별전형에 최종 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에 중복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에서 선발함.
6. 최종 합격한 자가 추가 합격 사정에 의하여 중복 합격하는 경우에는 이미 합격한 전형으로 선발함.
7.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심층면접성적, 서류평가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대학학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선발방법

▶ 1차 선발(서류전형)

- 수험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단함.
- 서류전형성적은 서류평가, 대학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을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1. 서류평가: 50점 만점으로 평가함. 학업충실도, 학부 수강과목의 체계성·계획성, 발전가능성, 봉사활동, 사회경력, 제2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함(자기소개서에는 봉사활동, 특성화 관련 경력, 사회경력, 전문자격 및 외국어능력 등을 서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대학학부성적: 4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점수산출방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함.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예정)하여 2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하였거나 편입한 경우 모든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대학학부성적 산출식
$\frac{\{(평점1 \times 학점1) / 만점1\} + \{(평점2 \times 학점2) / 만점2\} + \{(평점3 \times 학점3) / 만점3\} + \{(평점4 \times 학점4) / 만점4\}}{(학점1 + 학점2 + 학점3 + 학점4)} \times 40$

(예시) A대학: 3.9/4.3 130학점, B대학: 4.1/4.5 80학점인 경우

$$\frac{\{(3.9 \times 130) / 4.3\} + \{(4.1 \times 80) / 4.5\}}{(130 + 80)} \times 40$$

※ 평균평점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의 학부성적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함.

3.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7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점수산출방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함.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산출식
$(언어이해 영역 표준점수 + 추리논증 영역 표준점수) \times 0.7 - 30$

※ 법학적성시험(LEET)성적의 산출값이 70점 이상인 경우 70점으로 함.

4.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2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점수산출방법은 [환산표]와 같음.

▶ 2차 선발(논술 및 면접)

- 1차 선발에서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1. 논술시험: 10점 만점으로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영역을 평가함.
 2. 심층면접: 10점 만점으로 지원자의 이해력 및 분석능력, 논리적 추론력, 응용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V. 제출서류

■ 서류제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서류 제출 기간에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여 본교 접수처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 제출해야 함.
2. 출신대학에서 발급받는 제증명서는 워터마크 없는 용지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신대학에서 워터마크 없는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입학 서류 제출 시 입학전형 제출서류 체크리스트(p.10)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모든 제출서류의 오른쪽 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후, 분리되지 않도록 왼쪽 상단을 클립이나 집게로 묶어 제출해야 함(스테이플 사용을 금함).
4. 제출서류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출신학교가 기재된 경우 보라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함.
5. 2개 이상의 대학을 졸업(예정)하였거나 같은 대학을 2회 이상 졸업(예정)한 경우, 편입한 경우에는 모든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7. 해외 대학 출신자는 성적증명서 제출 시 이수학기, 평균평점, 만점평점 등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입학원서에 기재한 성적의 산출 근거에 대한 증빙서류(별도 양식 없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8.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 이외에,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9. 자기소개서에 대학 입학 이후의 봉사활동, 특성화 관련 경력, 사회경력, 전문자격 및 외국어능력 등을 기재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발급기관의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10.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기재사항란' 외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출신학교명의 기재와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직장명·직업명 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실격조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금지사항 예시 >

구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본인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및 출신학교명 기재 시	① 본인의 실명 기재 ② OO학교(초·중·고·대학교 등)를 다니면서	감점조치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실격조치
부모 및 친인척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① OOO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실격조치
	광의적 직종명 기재 시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실격 또는 감점조치*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하는 경우 감점조치 함.

■ 공통서류

※ 출신대학에서 발급받는 제증명서는 워터마크 없는 용지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출신대학에서 워터마크 없는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출서류	비고
입학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본 (개별작성 불가)
대학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에 기재한 모든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대학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에 기재한 모든 대학의 성적증명서 원본 ※ 총 이수학점, 평균평점, 만점평점이 기재된 전(全)학년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원본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FL(iBT), TOEIC 또는 TEPS 성적표 원본 ※ CBT, PBT 성적 및 외국에서 응시한 TOEIC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본 (개별작성 불가)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원본 ※ 자기소개서 중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목록」에 봉사활동, 특성화 관련 경력, 사회경력, 전문자격 및 외국어능력 등을 기재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발급기관의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함.
특별전형 지원자격별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특별전형 지원자격별 증빙서류

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경제적 배려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2022.9.20.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중심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가구원 (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2022.9.20.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가구원 *복지급여: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경감확인서 (차상위계층을 사유로 수혜 받는 사실 명시) ※ 2022.9.20.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신체적 배려대상	4. 장애인등급(중증/경증)으로 등록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사회적 배려대상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증명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 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7.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8. 「지방자치법」상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생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중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자기확인서(진술서)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록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10.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의 재원 경력이 있고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의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VI. 전형료

전형구분		전형료
일반전형		250,000 원
특별전형	경제적 배려대상 (특별전형 지원자격 1~3)	50,000 원
	신체적·사회적 배려대상 (특별전형 지원자격 4~10)	250,000 원

1.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신체적·사회적 배려대상) 1차 불합격자에게는 반환 전형료 50,000원을 접수 시 입력한 전형료 반환계좌로 반환함. 특별전형(경제적 배려대상)은 전형료 반환 없음.
2. 1차 합격자가 2차 전형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3.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수수료는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천재지변, 입시시행 기관의 과실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응시할 수 없다고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4.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VII. 2023학년도 '정원 외 인원' 선발

2023학년도 '정원 외 인원'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정해짐. 시행할 경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2023학년도 입학전형의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하며, 선발 인원은 2022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 인원에 따라 정해짐(2022학년도 결원인원 확정일은 2023년 2월 28일임).

VIII.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접수마감일인 2022년 9월 30일(금) 18:00까지 전형료 결제를 해야 함.
2.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어 접수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제출 서류의 허위, 위·변조, 기타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3. 입학원서를 인터넷 접수한 수험생이 지원서류를 기간 내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처리 됨.
4. 1차 선발 합격자가 심층면접고사에 결시할 경우, 불합격자로 처리함.
5.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6.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 관련 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I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등록기간 등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2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2.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제기 및 불복은 각 단계 합격자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3. 추가 합격자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통보할 예정임.
4.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중 등록금(등록확인 예치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 처리함.
5. 대학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X. 장학금 안내

장학금명		장학금내용
성적우수 장학금	이화최우수	수업료 전액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이화차우수	수업료의 2/3
	이화우수	수업료의 1/3
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	이화사랑	수업료 전액
	이화민음	수업료의 2/3 이상
	이화소망	수업료의 1/3 이상

- ※ 신입생의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최종 입학성적 점수 순위기준으로 지급함
- ※ 사회적취약계층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해당년도에 산정한 본교 신입.재학생 소득분위 분포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금액, 수혜 소득분위)이 변동될 수 있음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취약계층장학금 수혜 현황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 소득분위 0~5분위는 이화사랑 장학금(수업료 전액)을, 6~7분위는 이화민음 장학금을, 8분위는 이화소망 장학금을 수혜했으며, 추가적으로 소득분위 0~5분위는 면학장려금(매월 최대 60만원 생활비 지원,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을 수혜하였음.

■ 특별전형 지원자격별 증빙서류

유형	지원자격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여부 (해당 자격에만 ○표시)
경제적 배려대상	기초생활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 가구원 (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경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진술서) 	
신체적 배려대상	장애인등급 (중증/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사회적 배려대상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독립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 확인원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다문화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농어촌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중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아동복지시설의 재원 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의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기확인서(진술서) 	

[환산표]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

반영점수	TOEFL(iBT)	TOEIC	신 TEPS
20	111-120	975-990	486-600
19	108-110	950-974	428-485
18	105-107	925-949	394-427
17	103-104	900-924	370-393
16	101-102	875-899	352-369
15	99-100	850-874	336-351
14	97-98	840-849	330-335
13	95-96	830-839	324-329
12	93-94	820-829	319-323
11	91-92	810-819	314-318
10	89-90	800-809	309-313
9	87-88	790-799	304-308
8	85-86	780-789	299-303
7	83-84	770-779	294-298
6	81-82	760-769	290-293
5	79-80	750-759	285-289
4	78	740-749	281-284
3	77	730-739	277-280
2	76	720-729	272-276
1	75	710-719	268-271
0	74 이하	709 이하	267 이하